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(관광체육국)

☐ 총 1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진료 관련 규제 개선 건의	관광산업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(관광산업과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진료 관련 규제 개선 건의 (관광산업과, '25.2.19.)	〈 의료광고 〉 □ 현황 및 문제점 ○ 현행 「의료법」 상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,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더라도 법적 인증 사항이 아니면 광고할 수 없는 등 광고 내용의 제한이 과다함 □ 건의내용 ○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 유치의료기관은 장소 제한 없이 국내 의료광고 허용하고, 권위있는 국제 평가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청 □ 관련 규정 ○ 의료해외진출법 ○ 의료법	보건복지부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〈 원격진료 〉 □ 현황 및 문제점 ○ 외국인환자의 79%(외국인 환자 한국 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,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, 24.3월)가 비대면 진료 의향이 있으나,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의사를 직접 섭외해야 해서 이용률 저조 ○ 의료 관광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가 추가적인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, 현행법상 대리처방이 불가능 □ 건의내용 ○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16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를 개정하여 의사와 국외 의료인 및 외국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○ 「의료법」 제17조의2(처방전)을 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국내 진료 후 본국으로 돌아간 환자를 위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□ 관련 규정 ○ 의료해외진출법 ○ 의료법	보건복지부

□ 의료해외진출법

현행	개정안
제15조(의료광고에 대한 특례)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. 1.~6. <생략> <u>7. <신설></u>	제15조(의료광고에 대한 특례)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. 1.~6. <생략> <u>7.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지정한 우수 의료유치기관은 장소 제한 없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</u>

□ 의료법

현행	개정안
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 ① <생략> ② 의료인은 다음의 의료관광를 할 수 없다. 1.~13. <생략> 14. _____ _____,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~ 라. <생략> <u>마. <신설></u>	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 ① <생략> ② 의료인은 다음의 의료관광를 할수 없다. 1.~13. <생략> 14. _____ _____,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~ 라. <생략> <u>마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등을 사용하는 광고</u>

□ 의료해외진출법

현행	개정안
제16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,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<u>의료인</u>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“외국인환자의 사전·사후관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1. <생략> 2. 환자의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<u>상담·교육</u>	제16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컴퓨터,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<u>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</u>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“외국인환자의 사전·사후관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1. <생략> 2. 환자의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<u>상담·교육·진료</u>

□ 의료법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2(처방전) ② (중략)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<u>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u>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<u>3. <신설></u>	제17조의2(처방전) ② (중략)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<u>형제자매, 「의료 해외진출법」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u>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<u>3.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경우</u>